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
일부개정조례(안)

# 審 査 報 告 書

2007. 3. 28.  
행 정 위 원 회

## 1. 審 査 經 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3월 15일 영등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7년 3월 22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2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 
제2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(2007.3.26)

## 2. 提 案 說 明 의 要 旨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배상필)

### 가.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」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회계관직 용어 “기금출납명령관”을 “기금운용관”로 변경함.  
(안 제5조)
-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규정 개정(안 제6조)
-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6조의 4)
- 기금의 결산 및 보고 작성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0조)

### 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김완섭)

- 본 개정조례안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, 기금결산 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이 2006년 1월 1일 시행되어 조례 일부를 반영 보완하는 것이며
- 안 제1조 중 「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」이 2002년 1월 26일 폐지된 관계로 이를 정리 삭제하고
- 안제 6조 제2항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객관성, 전문성, 이해의 조정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
- 안 제6조 제4항은 의사정족수를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완화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고
- 안 제6조의3은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- 안 제10조는 기금의 결산 및 보고 작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 기금 운용계획안, 성과분석, 재무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재정통제가 확대될 것으로 사료됨.

#### 4. 修正案 要旨

- 안 제5조 제4항의 “은행법”에는 조문의 명확성을 위하여 법령 제명 인용에 낫표를 표시하고
- 안 제6조 제1항 제6호 “개정안”에는 “기금운용계획의 예치금 및 예비비 지출”로 “신·구조문 대비표”에는 “기금운용계획의 예치금 및 예비비”로 서로 상이하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“예치금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”으로 수정하고
- 안 제6조 제4항은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재직기간으로 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조정하고
- 2005년 제정된 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” 제9조와 “우리 구 재정운영 조례” 제21조에도 관련 규정이 조정되어 입법되어 있어 삭제하여야 하고
- 안 제6조의4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안 제10조와 일부 중복되고 일부 내용이 우리 구 “재정운영조례” 제20조에 입법되어 있어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안 제10조에 조정하여 신설하고
- 안 제6조의4 제3항은 “우리 구 재정운영 조례” 제22조에 입법되어 있어 삭제하고
- 안 제10조는 2005년 제정된 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” 제8조와 “우리 구 재정운영 조례” 제20조 관련 규정이 입법되어 있어 안 제6조의4 제2항을 통합하여 “기금운용계획”과 “기금결산 보고서”를 분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함.

#### 5. 審査結果 : 修正案 可決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(안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 
조례안에 대한 수정(안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5조 제4항의 “은행법”을 “「은행법」”으로 낫표를 삽입하고
- 안 제6조 제1항 제6호의 “기금운용계획의 예치금 및 예비비”를 “예치금 및 예비비  
지출에 관한 사항”으로 하고, 동조 제4항의 “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 
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”를 삭제하고
- 안 제6조 제2항의 “재정경제국장”을 “부구청장”으로, “지역경제과장”을 “재정경제  
국장”으로 하고,
- 안 제6조의3 제2항의 “재적의원 과반수 ”를 “재적위원 2/3 이상의”로 하고, ”출  
석의원 과반수“를 ”출석위원 2/3이상”으로 하고
- 안 제6조의 4를 삭제하고
- 안 제10조의 “(결산 및 보고)” 를 “(기금운영 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)”로 하고  
동조 제1항의 “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 후 80  
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”를 “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  
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·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  
다”로 하고, 동조 제2항의 “ 기금운용계획안, 기금운용의 성과분석, 재무보고서 및  
결산보고서를 “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 
하여 기금운용 성과분석, 재무보고서 및 세입·세출결산서와 함께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(안)

의안 번호	관련 45호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07. 3. 26 .

제안자 : 윤준용 위원

## 1. 수정 이유

-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현행과 같이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지원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였으며,
- 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에서 2/3로 수정하여 다수가 참석하여 심도있는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,
- 공무원의 임기를 재직기간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삭제하였으며
- 낫표삽입, 중복된 문항 삭제, 상위법과 일치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.

## 2. 주요 골자

- 안 제6조제1항제6호 “개정안”에는 “기금운용계획의 예치금 및 예비비 지출”로 “신·구조문 대조표”에는 “기금운용계획의 예치금 및 예비비”로 서로 상이하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“예치금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”으로 수정하고
- 안 제6조제2항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급을 현행과 같이 상향조정하였으며
- 안 제6조제4항은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재직기간으로 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수정하였으며
- 안 제6조의3 제2항에서는 개의 및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에서 2/3로 수정하여 심도 있는 의결이 되도록 하였으며
- 안 제10조는 2005년 제정된 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” 제8조와 “우리 구 재정운영 조례” 제20조 관련 규정이 입법되어 있어 안 제6조의4 제2항을 통합하여 “기금운용계획”과 “기금결산보고서”를 분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, 기타 중복문구를 수정하였음.



<p>6. "창업"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7. (생략)</p>	<p>6. ----- ----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----- -----.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	<p>6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7.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(생략)</p> <p>②기금출납명령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담당주사로 한다.</p> <p>③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의 기금출납명령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의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.</p> <p>④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은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 ----- ----- 기업지원담당주사 ----.</p> <p>③ 「지방재정법」 ----- ----- 기금운용관 ----- -----.</p>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----- 「은행법」 ----- -----.</p> <p>⑤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6조(기금운용위원회) ①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 기금운용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설〉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설〉</p>	<p>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</p> <p>4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</p>	<p>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4. (개정안과 같음)</p>

<p>3. 기타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</p> <p>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, 위원은 <u>관련국장 및 담당 상임위 구의원, 수탁금융기관의 장, 구청장이 위촉하는 관련 단체나 기관의 인사로 한다.</u></p> <p>③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, 간사는 담당과장이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주사가 된다.</p> <p>〈신 설〉</p>	<p>5. <u>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</u>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</p> <p>6. <u>기금운용계획의 예치금 및 예비비</u></p> <p>7. 기타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</p> <p>②----- 8인 이하 ----- ----- <u>재정경제국장</u> ----- ----- <u>지역경제과장</u> ----- ----- <u>관련과장</u> ----- <u>기금운용</u> 또는 <u>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</u> 구청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③----- 간사를 두되, 기업지원담당주사가 된다.</p> <p>④<u>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u></p>	<p>5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6. <u>예치금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</u></p> <p>7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----- 8인 이하 ----- ----- <u>부구청장장</u> ----- ----- <u>재정경제국장</u> ----- ----- <u>관련과장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<u>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u></p>
<p>〈신 설〉</p>	<p>제6조의2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총괄한다.</p> <p>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제6조의2(위원장의 직무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

<p>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 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/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제6조의3(회의 및 수당 등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.         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        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의3(회의 및 수당 등)          ① (개정안과 같음)          ② -----재적의원 2/3 이상의 -----, -----출석의원 2/3 이상의-----.          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	<p>제6조의4(기금의 운용계획)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         1.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        2.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         3.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      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        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·관·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6조의4(기금의 운용계획)          ① ~ ③ &lt;삭 제&gt; 안 제10조에 일부 조정</p>
<p>제7조(기금의 용자대상 및 용자절차) ①기금의 용자대상은 <u>중소기업기본법</u> 제2조의 규정에</p>	<p>제7조(기금의 용자대상 및 용자절차) ① ----- “「중소기업기본법」” -----</p>	<p>제7조(기금의 용자대상 및 용자절차)         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

<p>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. ② ~ ③ (생략)</p>	<p>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② (개정안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설&gt;</p>	<p>제10조(결산 및 보고)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②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안, 기금운용의 성과분석, 재무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0조(기금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)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·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②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성과분석, 재무보고서 및 세입·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
<p>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1조(시행규칙) ----- -----.</p>	<p>제11조(시행규칙) (개정안과 같음)</p>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5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3. .  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」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회계관직 용어 “기금출납명령관”을 “기금운용관”로 변경함. (안 제5조)
-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규정 개정 (안 제6조)
-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에 관한 규정 신설 (안 제6조의 4)
- 기금의 결산 및 보고 작성에 관한 규정 신설 (안 제10조)

## 3.참고사항

### 가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조례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 : 2007. 2. 20. ~ 3. 14.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(목적)중 “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제43조,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와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3조”로, “운용관리”를 “운용·관리”로 한다.

제2조의2(정의)제1호중 “중소기업기본법”을 “「중소기업기본법」”으로, 동조 제4호 및 제6호중 “중소기업창업지원법”을 각각 “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”으로 한다.

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3항중 “지방 재정법”을 “「지방재정법」”으로, “기금출납명령관”을 “기금운용관”으로 한다.  
②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담당주사로 한다.

제6조(기금운용위원회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①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용자대상자의 선정
2. 용자액의 결정
3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
4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5.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
6. 기금운용계획의 예치금 및 예비비 지출
7. 기타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이 되고, 위원은 관련과장 및 담당 상임위 구의원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기업지원담당 주사가 된다.

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6조 다음에 제6조의2 및 제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6조의2(위원장의 직무)**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총괄한다.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의3(회의 및 수당 등)**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.

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의4(기금의 운용계획)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- 1.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- 2.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- 3.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·관·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7조(기금의 용자대상 및 용자절차)제1항중 “중소기업기본법”을 “「중소기업기본법」”으로 한다.

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결산 및 보고)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안, 기금운용의 성과분석, 재무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,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에위한특별조치법 제3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<u>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, 그 운용관리에</u>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의2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중소기업자”라 함은 <u>중소기업기본법</u>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.</li> <li>2. ~ 3. (생략)</li> <li>4. 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”(이하 “창업투자회사”라 한다)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<u>중소기업창업지원법</u>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.</li> <li>5. (생략)</li> <li>6. “창업”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<u>중소기업창업지원법</u>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li> <li>7. (생략)</li> </ol> <p>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(생략) ②기금출납명령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담당주사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와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3조 -----</p> <p>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운용·관리 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2조의2(정의) -----</p> <p>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----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-----.</li> <li>2. ~ 3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4. -----</li> <li>-----</li> <li>-----</li> <li>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-----.</li> <li>5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6. -----</li> <li>-----</li> <li>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-----.</li> <li>7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 <p>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 ②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담당주사로 한다.</p>

## 신 · 구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③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의 기금출납명령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의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.</p> <p>④ ~ ⑤ (생략)</p> <p>제6조(기금운용위원회)</p> <p>①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 기금운용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용자대상자의 선정</p> <p>2. 용자액의 결정</p> <p>3. 기타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</p> <p>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, 위원은 관련국장 및 담당 상임위 구의원, 수탁금융기관의 장, 구청장이 위촉하는 관련 단체나 기관의 인사로 한다.</p> <p>③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, 간사는 담당 과장이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주사가 된다.</p> <p>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/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③「지방재정법」</p> <p>기금운용관</p>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</p> <p>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용자대상자의 선정</p> <p>2. 용자액의 결정</p> <p>3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</p> <p>4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</p> <p>5.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</p> <p>6. 기금운용계획의 예치금 및 예비비</p> <p>7. 기타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</p> <p>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이 되고, 위원은 관련과장 및 담당 상임위 구의원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③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기업지원담당주사가 된다.</p>



## 신 · 구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	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<신 설>	제6조의2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총괄한다.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<신 설>	제6조의3(회의 및 수당 등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.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<신 설>	제6조의4(기금의 운용계획)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1.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.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.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·관·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신 · 구조문 대조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7조(기금의 용자대상 및 용자절차) ①기금의 용자대상은 <u>중소기업기본법</u>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7조(기금의 용자대상 및 용자절차) ①—— ----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 style="text-align: right; padding-right: 20px;"><b>&lt;신 설&gt;</b></p>	<p><u>제10조(결산 및 보고)</u>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안, 기금운용의 성과분석, 재무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
<p><u>제10조(시행규칙)</u>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<u>제11조(시행규칙)</u>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